교육 신청 방법 안내

- 2026년 유전자검사기관 총괄책임자 대상 시범교육 -

KoNIBP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

교육시스템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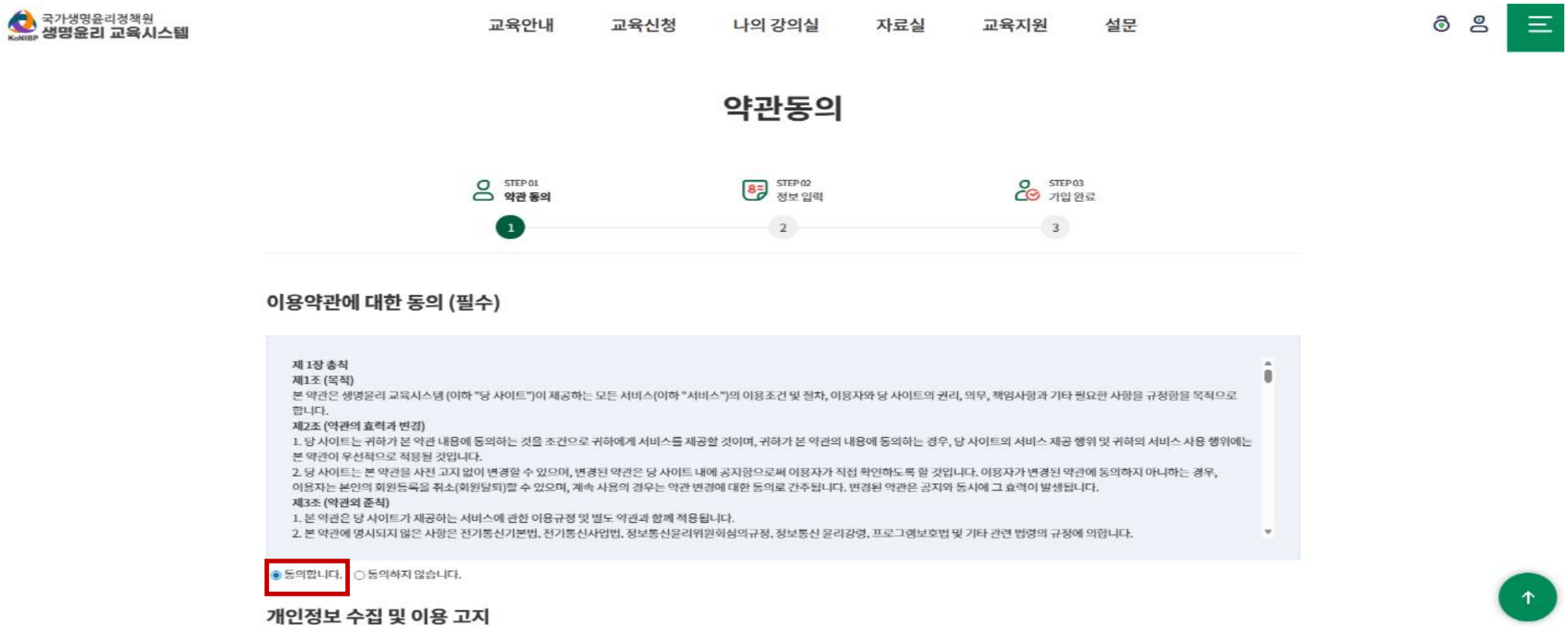
- 생명윤리 교육시스템 접속 https://edu.nibp.kr
 - 기존 회원이면 로그인 진행
 - 신규 회원이면 회원가입 진행

아이콘 클릭 시 회원가입
페이지로 이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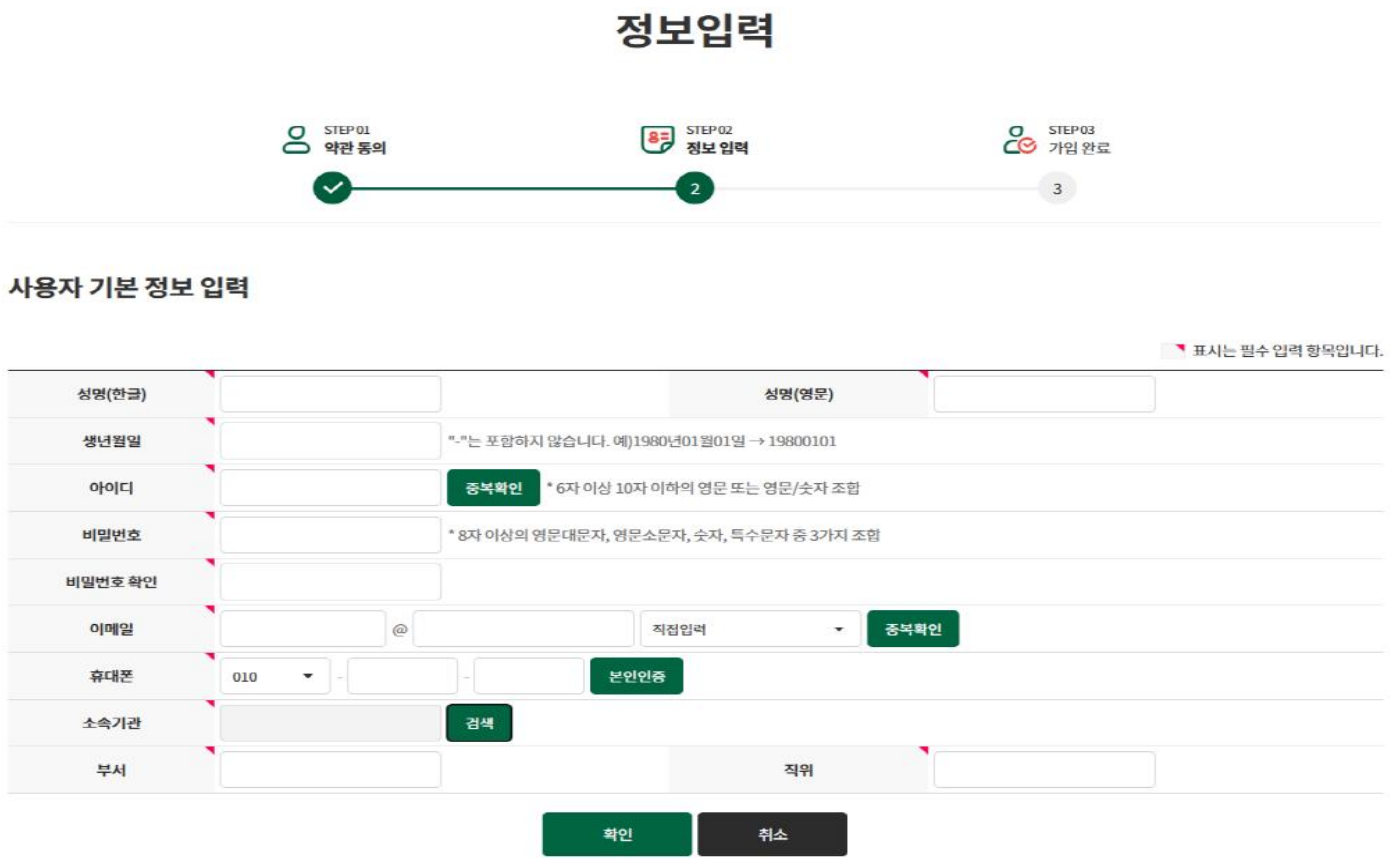
회원가입

-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- ‘동의합니다’ 클릭 후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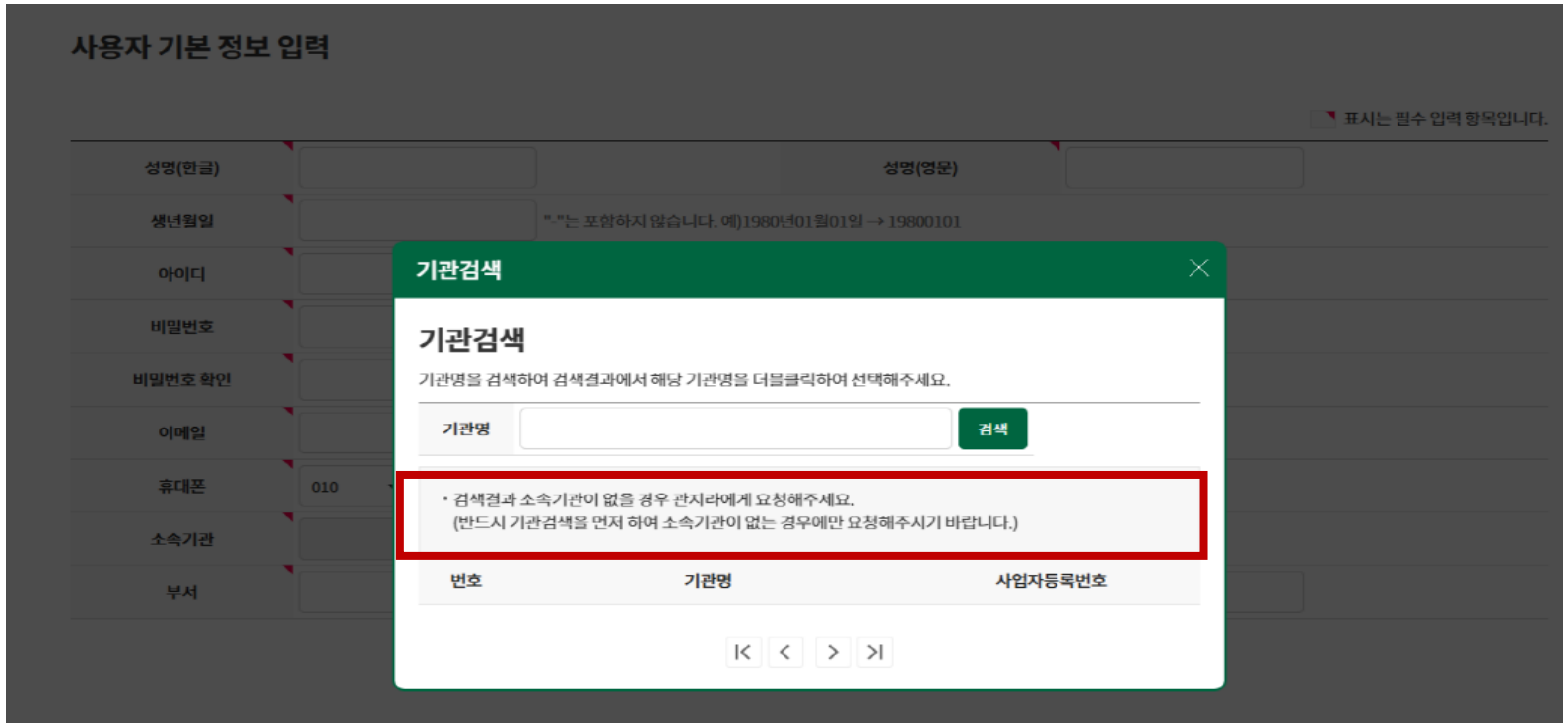
회원가입

- 사용자 기본 정보 입력(모두 필수 항목)
- 소속기관 – ‘검색’ 클릭



회원가입 – 기관 검색

- 기관명을 검색하여 해당 기관명을 더블클릭
- 검색결과 '소속이 없을 경우' **관리자 메일로 요청(기관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)**



검색결과-소속이 없는 경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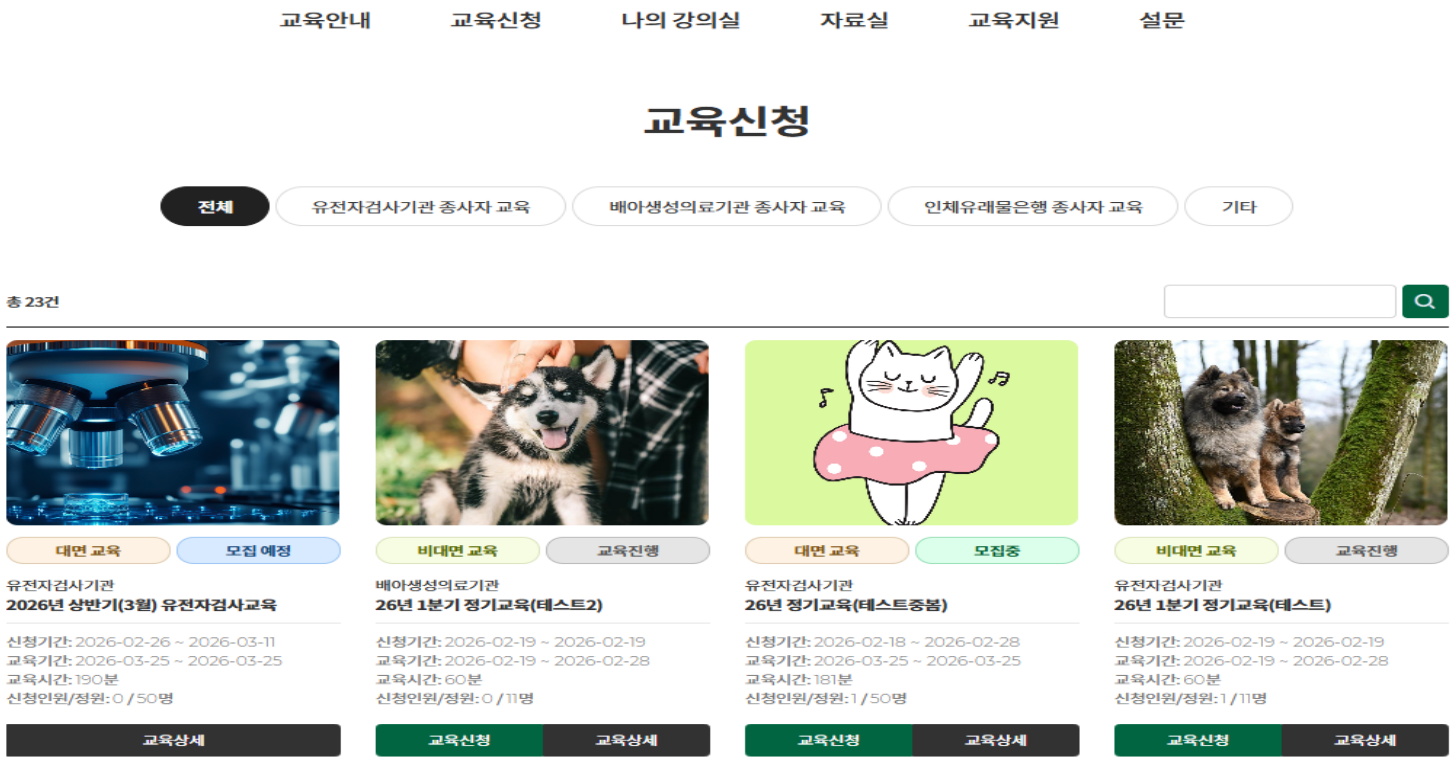
edu_research@nibp.kr

로 기관등록 요청

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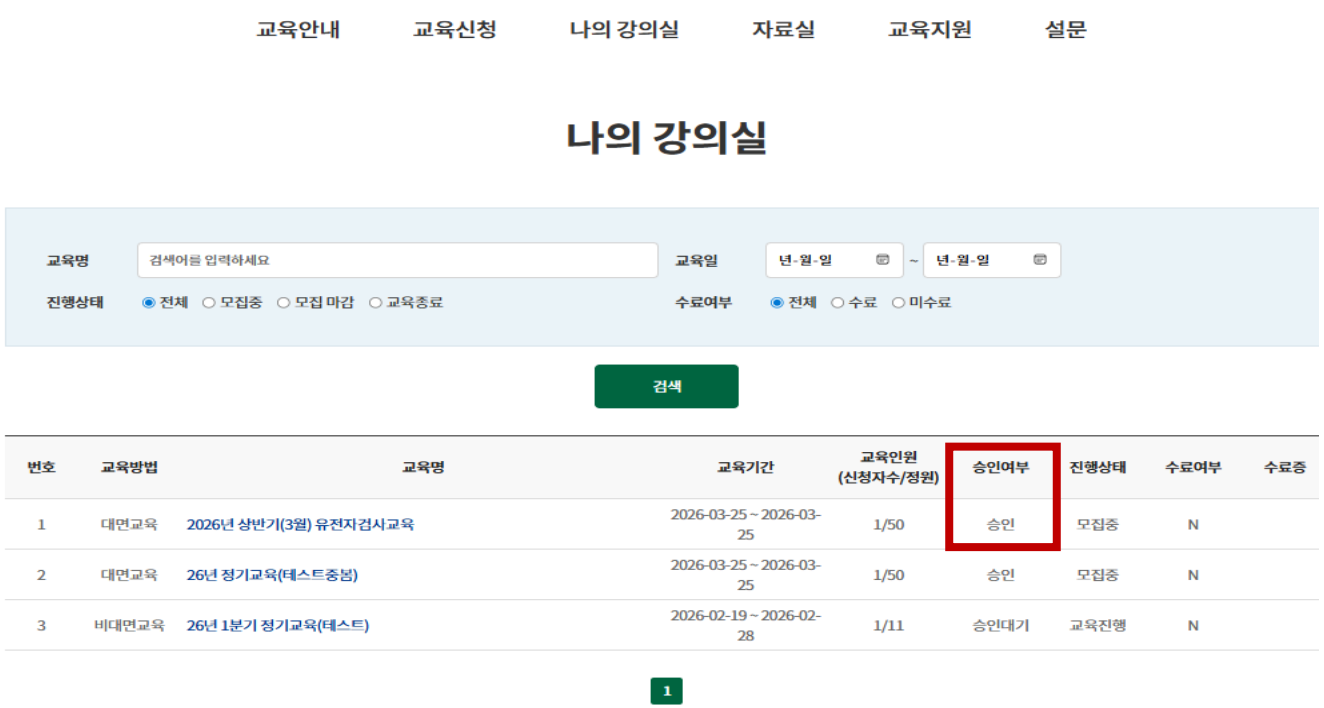
-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명 클릭

*** 교육명: 2026년 유전자검사기관 총괄책임자 대상 시범교육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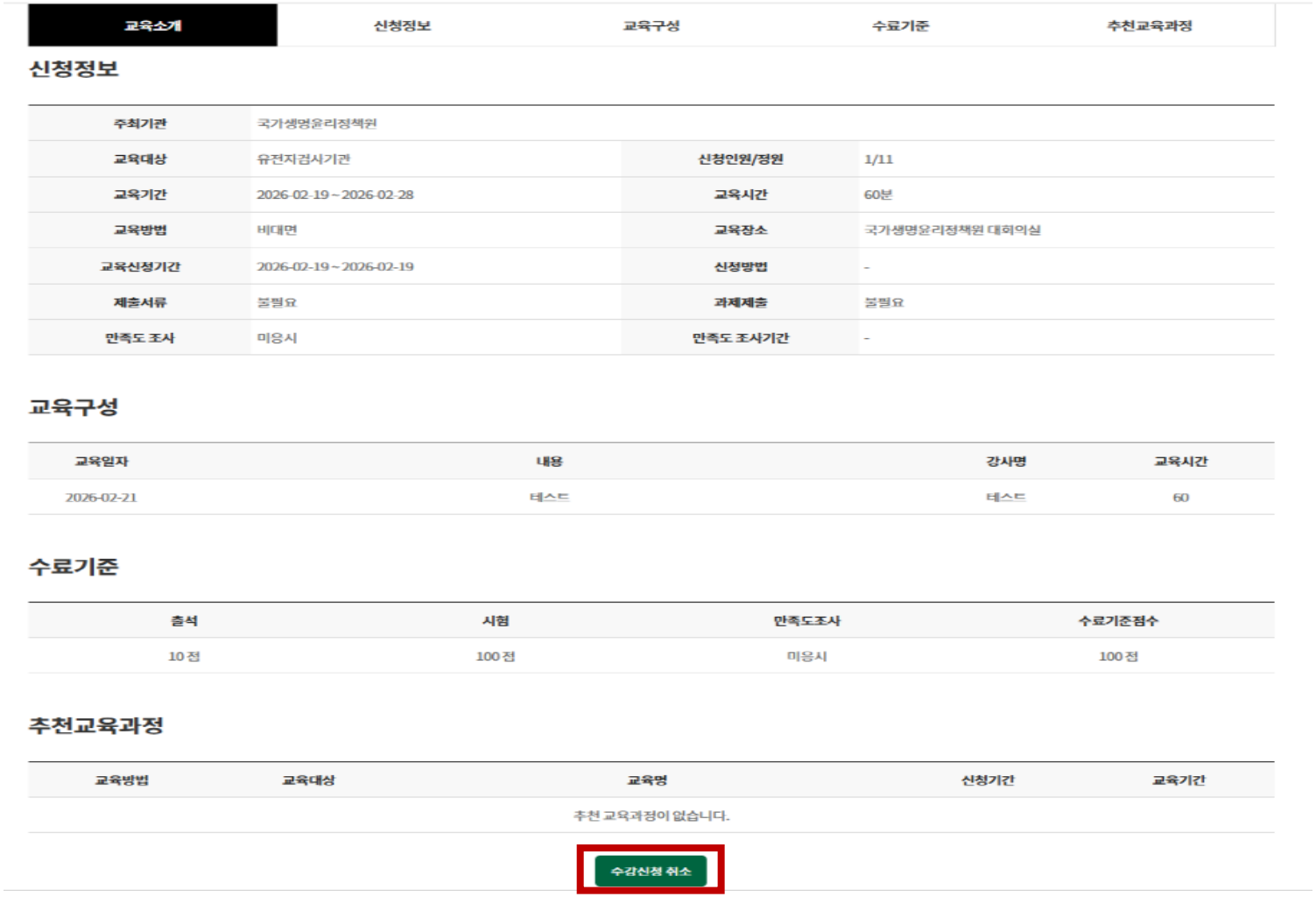
수강신청 승인 여부 확인 방법

- [나의 강의실]에서 확인 가능
- 승인여부가 **[승인]**으로 표시되면 최종적으로 접수 완료



수강신청 취소

- [나의 강의실]-[교육명] 클릭 후 수강신청 취소 가능



FAQ

- **정책원 교육을 수강하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?**

✓네. 정책원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. 교육시간 90%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제출시 정기 유전자검사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.

- **최초 교육을 받은 후,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되나요?**

✓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총괄책임자, 검사담당자, 결과정보처리담당자의 경우 종전의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✓결과분석전달담당자 및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는 종전의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